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6.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축산경영과)

1. 개정이유

「축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099호, 2020. 3. 24. 공포, 2020. 6. 25. 시행)됨에 따라 수정사가 면허를 대여할 경우, 사용 또는 알선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가축 인공수정소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별지 제9호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축산법 제14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정사 면허의 불법사용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2)
- 나. 가축 인공수정소 폐업 신고 시 첨부서류 중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분실 시 제출 예외규정 마련(안 별지 제9호의 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별표 및 별지 서식 별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한 경우
별표 2 제2호 위반사항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마.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제5호	면허 정지 6개월	면허취소	

별표 2 제2호 위반사항 마목을 위반사항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위반사항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14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별표 2]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면허 취소		
나.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면허 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면허 정지	면허 정지	면허 정지
라.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마.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면허 취소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면허 취소		
나.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면허 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면허 정지	면허 정지	면허 정지
라.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마.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바.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면허 취소		

가축인공수정소 [] 개설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수정소	④ 명칭
	⑤ 소재지

⑥ 수정인원

⑦ 정액 확보방법

⑧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신고사항 변경 일자 및 사유

⑨ 신고확인증 분실사유

「축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